

평창군포상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21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제안이유

- 평창군포상조례증 평창군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모범공무원상, 향토주인상, 향토일꾼상 등이 중첩되고 있고, 조례의 제정목적등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" 평창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" 을 삭제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가.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삭제(안 제4조, 제7조)

나. 공적심사위원구성을 부군수, 기획실장, 자치행정과장, 종합민원실장, 환경복지과장, 임업경영과장, 건설과장으로 한다(안 제9조)

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, 제7조의 "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"을 삭제한다.

제9조제③항중 부위원장인 "내무과장"을 "기획실장"으로, 위원은 "기획
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"을 "자치행정·종합민원실·환경복지·임업경영·
건설과장"으로 하고, 간사는 "서무계장"을 "서무담당주사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 다만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제7조의 4(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) 수 상대상자는 읍·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주인상: 15년이상 근속한 자 2. 향토일꾼상: 10년이상 근속한 자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내무과장, 위원은 기획실장·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과장,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,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 다만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제7조의 4(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) 수 상대상자는 읍·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주인상: 15년이상 근속한 자 2. 향토일꾼상: 10년이상 근속한 자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내무과장, 위원은 기획실장·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과장,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,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 다만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제7조의 4(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) 수 상대상자는 읍·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주인상: 15년이상 근속한 자 2. 향토일꾼상: 10년이상 근속한 자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내무과장, 위원은 기획실장·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과장,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,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포상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. 다만, 군민대상, 모범공무원 포상,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.</p> <p>제7조의 4(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) 수 상대상자는 읍·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향토주인상: 15년이상 근속한 자 2. 향토일꾼상: 10년이상 근속한 자 <p>제9조(포상절차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, 부위원장은 내무과장, 위원은 기획실장·사회·산업·산림·건설과장, 간사는 서무계장이 되고, 공적심사의결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</p>	